투자 위험 등급 2 등급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한국밸류 글로벌배당인컴&K-ESG 청년형소득공제 장기증권자투자신탁(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밸류 글로벌배당인컴&K-ESG 청년형소득공제 장기증권자투자신탁(주식)**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 합 투 자 기 구 명 칭 : **한국밸류 글로벌배당인컴&K-ESG 청년형소득공제 장기증권자투자신탁(주식)** (DU255)

2. 집 합 투 자 업 자 명 칭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vam.koreainvestmen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4 년 5 월 3 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4 년 5 월 31 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모집(매출) 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 조좌] (1 좌 = 1 원)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관련 :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 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 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특히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8.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20 및 동법 시행령 제 93 조의 6 에 따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정한 가입자격을 갖춘 투자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환매가 허용되지 않으며, 가입 후 3 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 등의 인출 시 해당 저축에 납입한 총 누계액에 일정비율(100 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지방소득세 포함시 추징세액 증가)하니 투자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10.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제 수령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11.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ESG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대상자산의 ESG 평가결과의 개선, 투자전략의 이행 등이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로 반드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차 CONTENTS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24.05.03

한국밸류 글로벌배당인컴&K-ESG 청년형소득공제 장기증권자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DU255]

투자 위험 등급 2 등급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주로 **국내 및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므로 주식가격변동에 따른 **주식가격변동위험**, 투자대상 국가의 상황, 정책 등에 따른 **국가위험 및 정책변경 위험**,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 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환율변동위험**, 시장상황에 따른 **금리변동위험**,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시장위험**,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상태에 따른 **신용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한국밸류 글로벌배당인컴&K-ESG 청년형소득공제 장기증권자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20 및 동법 시행령 제 93 조의 6 에 따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으로서,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과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국내외 주식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아래의 모투자신탁에 투자합니다.

펀드명칭	투자한도	주요 전략
한국밸류 지속성장 ESG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자산총액의 50%이상 (실질 국내주식보유비율 주1)은 40% 이상)	네거티브 스크리닝 방식으로 서스틴베스트에서 산출하는 ESG평가등급 중 일정 기준 이상 등급을 대상으로 1차 유니버스를 구성하고 이후 주주가치가 저평가 되어 있는 종목 및 주주가치의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을 선정하고, 추가 ESG상향등급의 기업 중 EPS의 지속 증가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투자
한국밸류 글로벌리서치 배당인컴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자산총액의 50%미만	저변동성 고배당인컴 자산 및 배당성장주 등의 종목에 집중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

주1) 실질 국내주식보유비율: 해당 모투자신탁(한국밸류 지속성장 ESG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증권시장 상장주식에 투자한 비율에 이 투자신탁의 해당 모투자신탁 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매일의 실질 주식보유비율을 말합니다.

- 비교지수 : (MSCI AC World Index 47.5%) + (KOSPI 47.5%) + (Call 금리 5%)

☞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모자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소득공제(C)	없음	1.2500%	0.7000%	1.5700%	1.2737%	131	266	406	703	1,545
수수료미징구-온라인-소득공제(C-E)	없음	0.9000%	0.3500%	1.1800%	0.9242%	95	193	296	514	1,140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없음	0.7600%	0.2100%	-	0.7841%	80	164	251	437	974

소득공제(S-T)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율 및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36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단위: %)

종류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23.05.04~ 2024.05.03	-	-	-	2023.03.17~ 2024.05.0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소득공제(C)	16.09	-	-	-	22.19
비교지수	10.67	-	-	-	14.51
수익률변동성	7.90	-	-	-	7.89

(주1) 비교지수 = MSCI AC World Index 47.5% + KOSPI 47.5% + Call 금리 5%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 기간 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4)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운용전문 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외혼합-주식형, 단위: %)				운용 경력 년수
					운용역		운용사		
			집합투자기구 수(개)	운용규모 (억원)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정신욱	1980	수석매니저 (책임)	7	2,161.34	17.56	-	17.56	-	11년 1개월
박종한	1983	수석매니저 (부책임)	7	1,244	17.56	-	17.56	-	2년 2개월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수와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는 공모·사모펀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 6)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운용했던 ESG 집합투자기구

성명	생년	직위	운용이력
정신욱	1980	수석매니저 (책임)	해당사항 없음
박종한	1983	수석매니저 (부책임)	해당사항 없음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요투자 위험	**원금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주식 등 가격 변동위험,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국내외 증권의 가격변동,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해당 국가의 경제전망, 환율변동 등 해외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인 "한국밸류 글로벌리서치 배당인컴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은 해외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 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이는 해당 외화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 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투자대상국 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는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집니다.
	환헤지 위험	환헤지는 외화자산이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파생상품을 통해 환율에 노출된 자산의 환율변동 위험을 축소하고자 부분 환헤지 전략을 수행할 수도 있으며, 환헤지 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외환시장의 상황 및 자산가격 변동, 예상 이익분배금 변동 등으로 환율변동으로 인한 각각의 환차손과 환차익이 완벽하게 상쇄될 수는 없는 등 환율변동 위험이 완전히 감소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 추가적인 비용 발생, 선물환 프리미엄 등에 따라 헤지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등 투자신탁 수익률에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이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외의 경제전망, 환율변동 등 해외 경제지표의 변화,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국가의 증권은 외국인의 투자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거래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국내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도 있으며, 환매가 정지될 수도 있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또한, 투자국가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 배당소득, 세후 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은 장외파생상품을 발행한 회사와의 직접적인 거래이므로 그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의 원리금을 제때에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신탁 해지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이후 1 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상기 위험들은 일부 주요 투자위험만을 요약 설명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 방법**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9영업일 (D+8)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10영업일 (D+9)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 수수료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vam.koreainvestmen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dis.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관한 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6(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 주요내용 :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 시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가입대상 :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 시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관(최대 6년) 제외) - 소득요건 :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4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적용합니다. - 가입기간 : **2024년** 12월 31일까지 - 투자기간 : 최초가입일로부터 3년 이상 5년 이하일 것 - 가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한 경우(원금 · 이자 · 배당 · 주식 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저축에 납입한 총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지방소득세 포함 시 추징금액이 늘어날 수 있음)하니 투자 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자의 총급여액이 8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6 천 7 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6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저축에 대한 과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집합 투자업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번호: 02.6978.6300 / 인터넷홈페이지: vam.koreainvestment.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 · 매출총액** 10조 좌
효력발생일	2024년 5월 31일	**존속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vam.koreainvestment.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의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52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형 집합투자기구>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 판매수수료후취형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됩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 (S-T)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 6에 따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서 정한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vam.koreainvestmen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vam.koreainvestment.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vam.koreainvestment.com)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밸류 글로벌배당인컴&K-ESG 청년형소득공제 장기증권자투자신탁(주식)	DU25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소득공제(C)	DU256
수수료미징구-온라인-소득공제(C-E)	DU257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소득공제(S-T)	DU258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중도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해당없음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 과 "투자전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 조좌 (1 좌 = 1 원)

주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주 2)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형으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2)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vam.koreainvestmen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모집절차 및 방법: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 부의 내용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밸류 글로벌배당인컴&K-ESG 청년형소득공제 장기증권자투자신탁(주식)	DU25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소득공제(C)	DU256
수수료미징구-온라인-소득공제(C-E)	DU257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소득공제(S-T)	DU258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사항
2022.06.10	최초효력발생
2022.09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신한아이타스 -> KB 국민은행)
2024.0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 ESG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자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 길 28 (대표전화: 02-6978-6300)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외혼합-주식형, 단위: %)				운용경력 년수
					운용역		운용사		
			집합투자 기구수(개)	운용규모 (억원)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정신욱	1980	수석매니저 (책임)	7	2,161.34	17.56	-	17.56	-	11년 1개월
박종한	1983	수석매니저 (부책임)	7	1,244	17.56	-	17.56	-	2년 2개월

성명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정신욱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007~현재)
박종한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 서스틴베스트(2012~2020) - BNK 자산운용(2020~2021)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021~현재)

[운용전문인력이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정신욱 - 1개, 33.31억원 / 박종한 - 해당사항 없음]

주 1) "책임운용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 2)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 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 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 5)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수와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는 공모·사모펀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 6)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운용했던 ESG 집합투자기구

성명	생년	직위	운용이력
정신욱	1980	수석매니저 (책임)	해당사항 없음
박종한	1983	수석매니저 (부책임)	해당사항 없음

나. 최근 3 년 운용전문인력 변동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 판매수수료후취형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됩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 (S-T)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 6에 따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서 정한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주) 보수 및 수수료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2 부의 내용 중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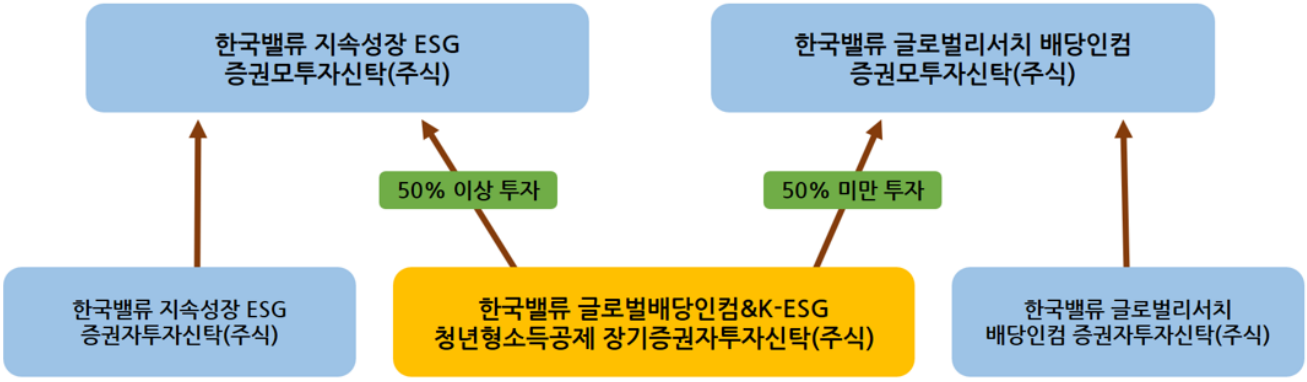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한국밸류 지속성장 ESG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주요 투자대상	투자신탁재산의 7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
	투자목적	투자신탁재산의 70% 이상을 가치투자 운용철학에 따라 주로 국내 주권(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으로서 ESG 관점에서 양호한 평가등급을 보유하고 있고 또 개선세가 돋보이는 종목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
	비교지수	([KOSPI] x 0.9) + ([CD 금리] x 0.1)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이 투자신탁은 네거티브 스크리닝 방식으로 투자 유니버스 구성 단계부터 ESG 전문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에서 산출하는 ESG 평가등급(원 등급 및 규모감안 등급 중 상위 결과값 기준)을 바탕으로 C 등급 이하 기업을 제외, AA, A, BB, B 등급 약 700 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1 차 유니버스를 구성합니다. 이후 주주가치가 저평가 되어 있는 종목 및 주주가치의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을 선정하고, 추가 ESG 상향등급의 기업 중 EPS 의 지속 증가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투자합니다. - ESG 평가기관과 활발한 피드백 교환을 통해 관리종목, 투자주의의환기 종목, 상장폐지 종목 등 하위 종목을 편출하고, 사업보고서,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공시자료 등 공개된 정보를 활용한 평가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도록 객관성 확보에 노력합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한국밸류 글로벌리서치 배당인컴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주요 투자대상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가치투자 운용철학에 따라 해외 및 국내주식에 장기 투자
	투자목적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가치투자 운용철학에 따라 해외 및 국내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으로 저변동성 고배당인컴 자산 및 배당성장주 등의 종목에 집중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
	비교지수	([MSCI ACWI] x 0.95) + ([Call 금리] x 0.05)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해외 및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여 향후 주가상승 및 배당 증가 등에 따른 투자자산의 가치 증대를 추구합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20 및 동법 시행령 제 93 조의 6 에 따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으로서,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한국밸류 지속성장 ESG 증권모투자신탁(주식))및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한국밸류 글로벌리서치 배당인컴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국내외 주식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50% 이상**	• **한국밸류 지속성장 ESG 증권모투자신탁(주식)** - 다만, 한국밸류 지속성장 ESG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증권시장 상장주식에 투자한 비율에 이 투자신탁의 한국밸류 지속성장 ESG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매일의 실질 주식보유비율은 40% 이상으로 한다.
	50% 미만	**• 한국밸류 글로벌리서치 배당인컴 증권자투자신탁(주식)**
②유동성자산 등	**10% 이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음 1.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 83 조 제 4 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 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상기 ① 내지 ②의 투자한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회계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계약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내지 ②의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 한국밸류 지속성장 ESG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요내용
①주식	**70% 이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②채권	**30% 이하**	-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③어음	**40% 이하**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④자산유동화 증권	**40% 이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⑤금리스왑거래	-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 - 투자목적: 헤지 및 헤지외목적	

⑥집합투자증권등	-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하로 한다. 다만, 법 234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가능
⑦증권의 대여 주 3)	-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⑧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 투자목적: 헤지 및 헤지외목적
⑨환매조건부 매도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함 -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⑩증권의 차입 주 4)	- 투자신탁자산 자산총액의 20% 이하
⑪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ESG 관련 투자대상에 관한 사항

■ 투자대상자산 중 주식편입 비중의 100%를 ESG 투자전략을 적용해 투자할 예정입니다.

■ "ESG 투자전략"을 적용함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성장이 가능한 기업"과 "지속가능성 테마(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녹색기술 등)와 관련된 기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 펀드는 서스틴베스트 평가기준 ESG 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에만 투자가능 합니다.

주1)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83조 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3. 환매조건부 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2) 상기 ①내지 ④의 투자비율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예외기간을 둡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함)
3.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함)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내지 ④의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 3)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
가. ETF 매매 편의성 증대 : ETF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들에게 보유증권을 대여할 수 있으며, 대차거래에 참여한 시장조성자들은 ETF 호가 수량 확대, 호가 스프레드 축소 등을 통해 ETF 매매가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ETF 를 매매(ETF 해당)
나.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모든 공모펀드)
다.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모든 공모펀드 해당)

주4)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모든 공모펀드 해당)

■ 한국밸류 글로벌리서치 배당인컴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요내용

①주식	**60% 이상**	-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②채권	**40% 이하**	- 법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③어음	**40% 이하**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④자산유동화 증권	**40% 이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⑤집합투자증권등	**40% 미만**	-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의 의하여 발행 된 것
⑥금리스왑거래	-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 - 투자목적: 헤지 및 헤지외목적	
⑦증권의 대여 주3)	-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⑧파생상품	- 법 제 5 조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까지 투자 - 투자목적: 헤지 및 헤지외목적 (다만,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	
⑨환매조건부 매도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함 -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⑩증권의 차입 주4)	- 투자신탁자산 자산총액의 20% 이하	
⑪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주1)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83조 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3. 환매조건부 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제 1호 내지 제 3호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

주2) 상기 ①내지 ⑤의 투자비율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예외기간을 둡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함)
3.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함)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 내지 ⑤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 3)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
가. ETF 매매 편의성 증대 : ETF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들에게 보유증권을 대여할 수 있으며, 대차거래에 참여한 시장조성자들은 ETF 호가 수량 확대, 호가 스프레드 축소 등을 통해 ETF 매매가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ETF를 매매(ETF 해당)
나.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모든 공모펀드)
다.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모든 공모펀드 해당)

주4)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모든 공모펀드 해당)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주요내용
이해관계인 투자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 83 조 제 4 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 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 2.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

■ **한국밸류 지속성장 ESG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투자제한**

구분	주요내용	적용예외
①이해관계인 투자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 83 조 제 4 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 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 2.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	
②동일종목 투자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 80 조제 3 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 예금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1.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최초설정 일부터 1 개월간

	2.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 · 매매 · 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 ·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 10 조의 2 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 · 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③집합투자증권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 4-52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초 설정일부터 1 개월간에 한정한다.)	최초설정 일부터 1 개월간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내에서 법 시행령 제 80 조 제 10 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1 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④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법시행령 제 80 조 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최초설정 일부터 1 개월간
⑤계열회사발행 증권투자	- 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주)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한국밸류 지속성장 ESG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투자대상 ⑤내지 ⑨, 상기 ②내지 ④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②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③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④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⑤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2. 제 1 호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까지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책임이 강화된 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6 개월
2.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의 경우: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
3. 제 1 호 및 제 2 호에도 불구하고 제 1 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이 제 2 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처분이 가능한 시기가 6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 개월

3. 집합투자업자는 "한국밸류 지속성장 ESG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투자대상의 신용평가등급이 해당 투자대상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 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 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한국밸류 글로벌리서치 배당인컴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투자제한

구분		주요내용	적용예외
①	**이해관계인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 83 조 제 4 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 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 2.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	
②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 80 조제 3 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 예금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1.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2.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 · 매매 · 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 ·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 10 조의 2 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 · 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	
③	**동일법인 발행지분증권**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④	**집합투자증권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 4-52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내에서 법 시행령 제 80 조 제 10 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1 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⑤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 법시행령 제 80 조 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⑥	**계열회사발행 증권투자**	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주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기 ②~⑤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주2) 주1)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까지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책임이 강화된 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6개월
2.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의 경우: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이 제2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처분이 가능한 시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주3) 집합투자업자는 "한국밸류 글로벌리서치 배당인컴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투자대상의 신용평가등급이 해당 투자대상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한국밸류 지속성장 ESG 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50% 이상,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한국밸류 글로벌리서치 배당인컴 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50% 미만으로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다만, 모투자신탁인 '한국밸류 지속성장 ESG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증권시장 상장주식에 투자한 비율에, 이 투자신탁의 '한국밸류 지속성장 ESG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매일의 실질 주식보유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상으로 합니다.

- 비교지수: (MSCI AC World Index 47.5%) + (KOSPI 47.5%) + (Call 금리 5%)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를 통해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위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한국밸류 지속성장 ESG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70% 이상을 가치투자 운용철학에 따라 주로 국내 주권(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주권 등의 가격 변동에 따라 운용실적이 변경되며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네거티브 스크리닝 방식으로 투자 유니버스 구성 단계부터 ESG 전문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에서 산출하는 ESG 평가등급(원 등급 및 규모감안 등급 중 상위 결과값 기준)을 바탕으로 C 등급 이하 기업을 제외, AA, A, BB, B 등급 약 700 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1 차 유니버스를 구성합니다. 이후 주주가치가 저평가 되어 있는 종목 및 주주가치의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을 선정하고, 추가 ESG 상향등급의 기업 중 EPS 의 지속 증가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투자합니다.

(1) 주식운용

(가) 운용 컨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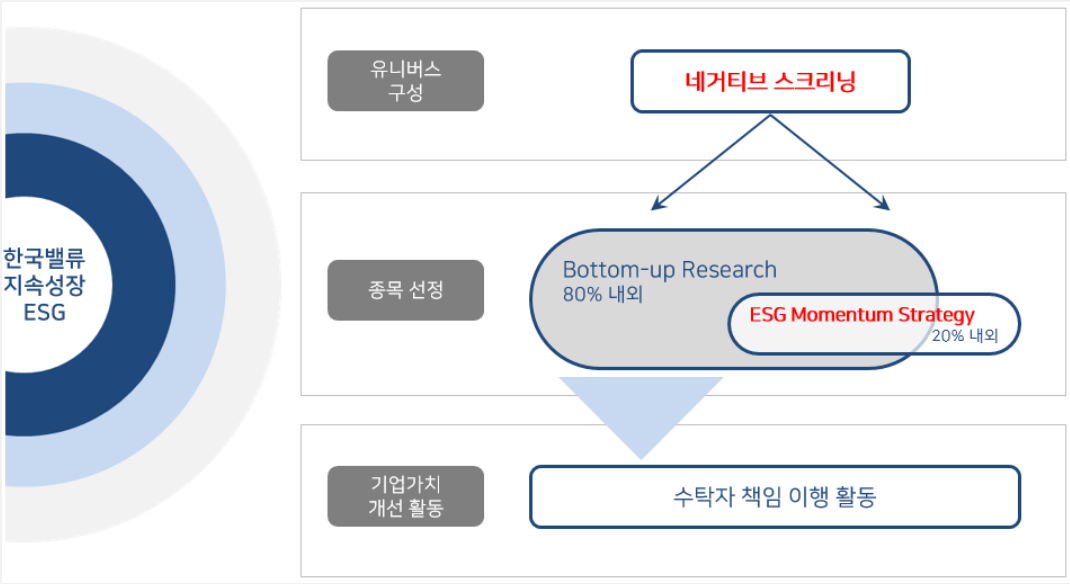

■네거티브 스크리닝

* 네거티브 스크리닝 방식은 지속가능 투자 전략 중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
* 서스틴베스트에서 산출하는 ESG 평가 등급(원 등급 및 규모감안 등급 중 상위 결과값 기준)을 바탕으로 C 등급 이하 기업을 제외, AA~B 등급 약 700 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1 차 유니버스 구성

■ Bottom up Research

1 차 유니버스 구성 종목 중 여력, 구조, 의지 항목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 또는 확실한 개선이 진행 중이나 시장의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투자 결정

구분	검토 사항
여력(Resource)	주주환원 여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주주환원 여력이 증가하는가?
구조(Structure)	주주가치 향상이 가능한 적합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
의지(Mindset)	주주가치 향상을 위한 의지가 있는가? 주주가치 향상 의지의 변화 요인이 있는가?

■ ESG Momentum Strategy

주가 상승률 = EPS 변화율 x PER 변화율

ESG 모멘텀이 있는 종목의 경우 PER 멀티플 하방 경직성을 보유하여 멀티플 하락에 따른 주가 하락 위험은 제한적으로 판단. 따라서, 핵심 주가 동인은 예상치 대비 실제 EPS 의 변화

- **EPS(Earning Per Share)** :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당기순이익)을 그 기업이 발행한 총 주식수로 나눈 값으로, 1 주당 이익을 얼마나 창출 하였느냐를 나타내는 지표
- **PER(Price Earning Ratio)** : 주가를 주당순이익(EPS)으로 나눈 수치로 계산되며 주가가 1 주당 수익의 몇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나) 운용 프로세스

■네거티브 스크리닝

* 서스틴베스트에서 산출하는 ESG 평가 등급(원 등급 및 규모감안 등급 중 상위 결과값 기준)을 바탕으로 C 등급 이하 기업을 제외, AA~B 등급 약 700 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1 차 유니버스 구성
* 한국밸류 지속성장 ESG 펀드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방식으로 1 차 유니버스를 구성하며, 이후 ESG 통합 및 경영관여 주주활동 등의 전략 수행

√ ESG 주요 평가요소

구분	주요평가요소
E(environmental)	혁신 활동, 생산 공정, 공급망 관리, 고객관리 등
S(social)	인적자원관리, 공급망 관리, 고객관리, 사회공헌 및 지역사회 등
G(governance)	주주의 권리, 정보의 투명성, 이사회의 구성과 활동, 이사의 보수, 관계사의 위험, 지속가능 경영 인프라 등

√ ESG 등급 구분

등급	등급의 의미
AA	• ESG 리스크 관리 성과가 매우 우수한 종목
A	• ESG 리스크 관리 성과가 우수한 종목
BB	• ESG 리스크 관리 성과가 다소 우수한 종목
B	• ESG 리스크 관리 성과가 보통인 종목
C	• ESG 리스크 관리 성과가 미흡한 종목
D	• ESG 리스크 관리 성과가 부진하여 투자 배제가 고려되는 종목
E	• ESG 리스크 관리 성과가 상당히 부진하거나 심각한 ESG 문제의 발생으로 인해 투자 배제가 고려되는 종목 • 심각한 부정적 재무 이슈가 발생한 종목

***ESG 평가등급은 기업의 적극적인 ESG 개선 활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된 상향 ESG 등급 기업에 투자**

■ Bottom up Research

Screening → Scoring → 유니버스 구성 → 포트폴리오 구성의 단계

프로세스	주요 내용
Screening	1. 주주가치 개선이 필요한 종목군 - 이미 주주정책이 우수한 종목 제거 - 부채 및 차입금 비중이 높아 향후 실적개선에도 불구 주주환원 여력이 크지 않은 회사 제거 2. 주주가치 개선 노력이 진행 중이고, 시장의 재평가가 필요한 종목군 - 직전 2 년 간 주당 배당금이 증가하며 주주정책의 개선을 보이고 있는 회사로, 향후 2 년 간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되는 회사 - 주주정책 개선과 이익 증가에도 저평가가 해소되지 않은 기업을 선별
Scoring	여력(resource) - 구조(structure) - 의지(mindset) 각 항목별 체크포인트에 따라 scoring 1. 여력: 이익증가 가시성, 잉여현금흐름 증가 여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로열티 증가도(지주회사의 경우), 비영업용 자산 규모 등 2. 구조: 터널링 및 내부거래 현황, 경영진 보상(대리인비용)의 정도, 잠재희석증권(CB, BW 등) 현황 등 3. 의지: 상속 및 세금 이슈, 대주주의 지배력, 행동주의 펀드의 참여도 및 소액주주 운동 여부, 중장기적 주주환원정책 등
유니버스 구성	- Scoring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 유니버스 구성 - 항목별 점수의 분포를 고려하여 카테고리별 세부 유니버스 구성 (여력, 구조, 의지 항목 중 특정 항목의 점수가 낮은 케이스 선호)
포트폴리오 구성	- 유니버스 종목들을 선별하여 최소 비중을 가져가되, 변화 가능성이 높아진 종목에 집중 투자 - 당사의 지분율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및 soft action 실행 (주주서한발송, 경영진 미팅 등)

■ESG Momentum Strategy

프로세스	주요 내용
유니버스 구성	- ESG 등급 C 이하 종목 제외 (네거티브 스크리닝) 후, - PER 이 양 극단 분위에 위치한 종목 제외 (25%~75% 내 종목 선정)
Screening	- ESG Momentum 종목 선정: ESG '원점수' 기준 증가폭 상위 종목 * ESG 상승 정도를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등급이 아닌 점수 사용 * 연도별 유니버스 변화로 인한 상대평가 이슈를 완화, 개별종목의 ESG 특성 부각 * 재무리스크로 인하여 등급 조정된 회사 제외
펀더멘털리서치	- EPS 추정치 상향 종목 선정 * EPS 상향 가능성 및 상승폭에 대한 검증(기업미팅, In-house 리서치 및 외부 리서치 활용), 해당 산업의 멀티플 하향 리스크 점검 * 전체 포트폴리오의 최소 20% 비중으로 구성, 종목별 매력도에 따라 비중 유동적 조절

(2) 채무증권/유동성자산 등의 운용전략

- 투자신탁재산의 30% 이하를 국채, 통안증권, 우량회사채 등 신용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채권으로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 주로 주권에 투자하되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채무증권, 파생상품, 수익증권, 기업어음,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투자 · 운용합니다.

(3)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주로 주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권 거래시장의 흐름을 90% 반영하고 채권을 포함한 기타 유동성 자산의 흐름을 10% 반영한 아래의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 = ([KOSPI] x 0.9) + ([CD 금리] x 0.1)**

단,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한국밸류 글로벌리서치 배당인컴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해외 및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여 향후 주가상승 및 배당 증가 등에 따른 투자자산의 가치 증대를 추구합니다.

(1) 운용 컨셉

글로벌 초저금리, 저성장 환경, 한국의 상대적 부진심화, 글로벌 경기침체 발생에 대한 최적의 대안으로 글로벌리서치 배당인컴 펀드를 출시하였고, 최적 비율의 국가/통화별 자산배분을 위해 국내 및 해외 증권사 해외리서치팀과 정기적 세미나를 통한 업무 협업과 내부 스터디를 통하여 최적의 투자 결정

구분	진단	대안
초저금리	- 전세계 금리의 지속적인 하향 - 일부 국가들은 마이너스 금리에 진입 - 안전자산의 기대현금흐름 급감	저변동성 고배당인컴 신성장산업
저성장	- 글로벌 경기위축과 보호주의 강화 - 구경제의 몰락과 신성장 기업들의 탄생	저변동성 고배당인컴 신성장산업
한국경제와 증시 상대적 부진심화	- 글로벌 경기사이클에 민감한 경제구조 - 불리한 인구구조, 정체된 생산성 향상 - 기존산업의 하향세, 신성장동력의 부재	글로벌 투자
글로벌 경기 침체 발생에 대한 두려움	- 통화정책 유효성 한계봉착 - 부채를 통한 자산가격 부양의 한계 - 자국우선주의, 포퓰리즘 추세 강화	통화분산

(2) 운용 프로세스

개별 자산에 대한 bottom-up 분석과 국가/통화별 자산배분에 대한 Top-down 분석을 병행

프로세스	주요 내용
Screening	- Tranche 1. 변동성, 배당수익률 - Tranche 2. 배당성장 지속기간 (미국 25 년, 그 외 5 년) - Tranche 3. 매출액 성장률, 재무건전성, 밸류에이션
Bottom-up Research	- Tranche 1. 저변동성 고배당 충족여부, 자산의 퀄리티, 자산가격 하락 리스크, 인컴수익의 지속성 - Tranche 2. 비즈니스모델의 견고함, 현금흐름대비 배당액 비율 체크, 이익성장 지속성 확인 - Tranche 3. 산업의 장기성장성, 경영진의 자원배분능력,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요인확인
국가/통화별 투자비중	- 벤치마크를 기준으로 경기선행지수, 경제성장률, 금리, 외화수지, 외환보유고, 경제정책, 주가, 밸류에이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국가/통화별 최적비율 산출 - 국가별, 통화별 비중은 벤치마크 대비 최대 ±20%p 편차 내에서 관리
모델포트폴리오 구성	- 개별자산에 대한 Bottom-up 리서치와 국가별/통화별 최적비중에 대한 Top-down 리서치를 결합 1) 금리수준 및 방향성,

	2) 자산가격 레벨에 따라 Tranche 별 비중을 ±10% 내에서 조절 - 트렌치별, 국가, 통화별 상관관계를 통한 MP(모델포트폴리오)의 예상 변동성 시뮬레이션 실시
포트폴리오 운용	- 변동성이 낮은 자산일 수록 매입단가를 낮추기 위한 세심한 매매전략 시행 - 환 변동에 따른 리스크는 변동성 레벨에 따라 mean-reversion(평균회귀)에 부합하는 전략수행 (강세통화자산 비중축소, 약세통화자산 비중증가)
모니터링	- MP(모델포트폴리오) 시뮬레이션의 예상 변동성, 자산간 상관관계와 비교 - 성과요인에 대한 구체적 분석 (국가, 통화, 스타일, 트렌치 등) - 자산가격, 통화가치, 자산간 상관관계 변화요인에 따른 리밸런싱 방향 모색

(3)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주로 글로벌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해당 지수를 95% 반영하고, 투자신탁의 유동성 관리를 위하여 유동 자산의 흐름을 5% 반영한 아래의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 = ([MSCI ACWI] x 0.95) + ([Call금리] x 0.05)**

※ MSCI ACWI(MSCI All Country World Index): 모건스탠리 자회사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작성하여 발표하는 글로벌 주식으로 구성된 지수로 글로벌펀드의 투자기준이 되는 지표가 되고 있으며 MSCI ACWI 지수를 통해 세계 증시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내에서 위험 관리전략을 수행합니다.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밸류 지속성장 ESG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위험관리 전략**

수준별 위험관리	해당 위험	관리방안
ESG 평가기관	평가대상기업 선정 위험	평가기관과 활발한 피드백 교환을 통해 관리종목, 투자주의환기 종목 등 하위 종목 편출
	평가 기준	사업보고서,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공시자료 등 공개된 정보를 활용한 평가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도록 객관성 확보
기업탐방 및 자료조사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부도 위험	기업의 신용등급과 재무상황 변동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합니다.
	이익감소, 자산가치 하락 위험	투자대상 기업의 가치를 정성적·정량적 분석을 통해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운용역 수시점검	경영진의 주주이익 침해 위험	주주들에 대한 불리한 정책결정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통해 주주에 대한 이익을 제고시키도록 합니다.
최고운용책임자	장기수익률 저조 위험	투자하고 있는 자산구성이 이 투자 신탁이 추구하는 장기 안정적인 수익률 달성에 적정한지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준법감시인	법규, 규정 위반 위험	정기/수시 교육, '사전주의리스트' 작성 및 적용
컴플라이언스	업무처리절차,	정기/수시 모니터링 실시 업무프로세스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시스템 오류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 **한국밸류 글로벌리서치 배당인컴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위험관리 전략**

- 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하여 환위험 회피를 위한 환헤지 전략을 부분적으로 수행하면서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주식 등은 미국달러, 홍콩달러 또는 일본엔화 등 외화로 표시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해당 통화 대비 한국원화의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외화표시자산 투자에 따른 환위험의 관리방안으로는 비교지수(MSCI ACWI)의 특성상, 미국달러 비중이 60%내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당사 포트폴리오 또한 달러자산의 비중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하여 주기적 외환, 국가 비중 리밸런싱을 수행할 예정이며, 원달러 환율의 변동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환헤지를 실시할 계획이며, 각 통화별 장내 및 장외 파생상품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환헷지 전략도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상황의 급변동, 거래량 부족 등의 이유로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신탁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통화관련 장내외파생상품 등을 통해 환헤지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환헤지 비율은 시장상황, 투자수단의 유용성 등을 고려하여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 이 경우 노출되는 통화의 50% 이내에서 환헤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환헤지와 관련하여 환헤지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환헤지란?
환헤지는 외화자산 투자시 환율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며, 일반적으로 통화선물 매매 및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위험회피를 추구합니다. 즉 글로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대부분은 글로벌통화로 투자자산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원화 가치 상승)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투자대상 국가의 경제성장 등으로 인하여 해당 국가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은 환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환헤지로 인하여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이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당사는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현실화 되었을 경우의 비상대응계획을 위기대응매뉴얼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량환매의 경우 펀드런 대응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위기상황을 단계별로 분류하여 비상상황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1 단계: 일정 규모의 대량환매 등 발생시 펀드런 대응팀 구성 및 펀드 유동성 체크
2 단계: 대량환매 지속 시 자산매각 등 조치 시행 및 펀드런 대응팀 가동
3 단계: 대량환매 장기간 지속 시 유동성 확보 극대화 및 환매연기 조치 검토
(펀드내 보유자산 처분 불능 시 법령의 절차에 따른 환매연기 결정 및 수익자총회)
진정: 환매규모 감소 등 대량환매 진정 단계 시 상황 진도 점검 및 포트폴리오 정상화 등 사후조치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국내 및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주된 투자대상인 주식 가격의 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또한 해외 주식 등은 외국통화로 거래되기 때문에 원화대비 해당 외국통화의 환율변동이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단, 상기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으며 이 투자신탁 투자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완전하게 열거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투자환경의 변화 등에 의하여,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위험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주식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주로 국내주식 및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대상종목의 주식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금리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해외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 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이는 해당 외화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 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투자대상국 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는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집니다.
환헤지 위험	환헤지는 외화자산이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파생상품을 통해 환율에 노출된 자산의 환율변동 위험을 축소하고자 부분 환헤지 전략을 수행할 수도 있으며, 환헤지 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외환시장의 상황 및 자산가격 변동, 예상 이익분배금 변동 등으로 환율변동으로 인한 각각의 환차손과 환차익이 완벽하게 상쇄될 수는 없는 등 환율변동 위험이 완전히 감소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 추가적인 비용 발생, 선물환 프리미엄 등에 따라 헤지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등 투자신탁 수익률에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위험	신탁재산을 주권, 채무증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주권, 채무증권, 장외파생상품(스왑)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국가위험 및 정책변경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전세계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 지역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이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외국인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국가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 배당소득, 세후 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여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대여할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나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투자자는 기회비용 부담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집중 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 측면에서 우수한 국내 기업 주식이라는 한정된 투자대상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좀더 분산 투자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큰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시장상황 또는 환경변화에 불리하게 영향을 받아 그 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투자신탁에 비해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 관련 위험	해외증권시장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국가의 세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해외에서 납부된 세금에 대해 양국간에 이중 과세 조정제도가 정비되지 않았을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환매지연위험	국제결제와 관련된 송금지연 발생 및 투자대상국가의 증권거래소가 장기간 휴장할 경우 환매대금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극적 매매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수행할 수 있으며, 통상 이러한 전략은 상대적으로 높은 매매비용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동 전략은 일반적으로 시장수익률과 괴리가 클 수 있으므로, 기대수준이 시장수익률 수준인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투자프로세스 수행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전통적인 기업 분석 외에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이슈 등의 비재무적 이슈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투자대상 종목 선별 등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시장상황 등에 따라 이러한 투자전략 시스템을 활용한 전략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일부 산업에 속하는 증권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섹터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ESG 평가결과 적용에 따른 위험	외부 평가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정보의 완벽한 정확성,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부 리서치 결과 등에 따라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평가기관의 기준 변경이나 투자기업의 중대한 컨트로버시 이슈 발생 등으로 ESG 평가결과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하위 등급의 종목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유동성위험	유가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환매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중도매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Leverage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로 집합투자재산의 큰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거래중지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증권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상 이종통화의 이용 등으로 인해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 오퍼레이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발생 가능성이 국내투자시보다 더 높습니다. 또한 국내에 투자하는 때와는 달리 시차에 의해 시장의 개/폐장 시간대가 다를 수 있으며, 그 차이로 인해 투자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환매중 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자금송환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해외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해당 국가로부터 모투자신탁의 배당소득 및 매매차익의 본국송환 행위 또는 증권의 매매절차와 관련한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투자신탁은 투자대상 국가로부터의 투자제한의 적용 또는 자금의 송환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 당함으로써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와 국제금융결제와 관련한 송금지연 등 사유발생 시 환매금액 지급연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투자회사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위험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이후 1년(법시행령제 81 조제 3 항 제 1 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법시행령제 81 조제 3 항 제 1 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될 수 있습니다.
증권대차 거래 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국내 및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주식형 투자신탁으로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6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높은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와 주식의 가격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주식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예: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재 산정할 예정이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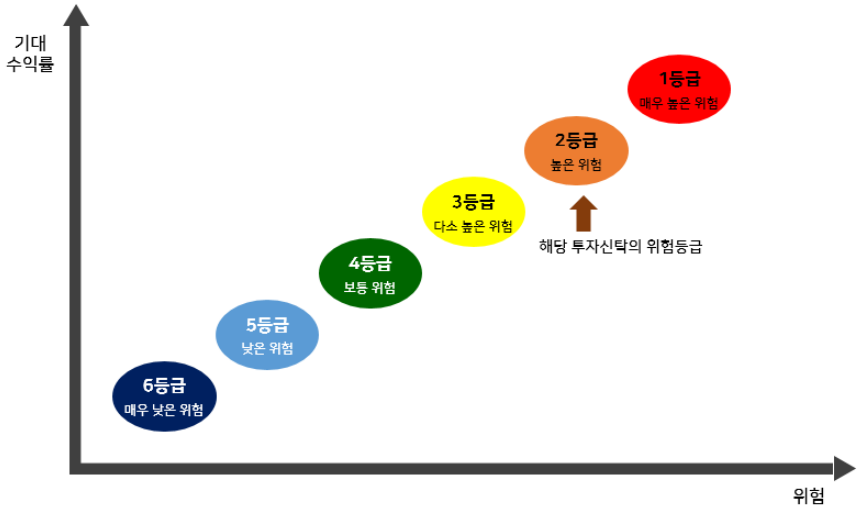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등급	등급 분류기준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1)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Commodity),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2)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3)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4)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위험등급을 조정함
주5) 위에 명시되지 않은 펀드의 위험 등급은 투자대상.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정함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거주자(병역 이행 시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관(최대 6년) 제외)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4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적용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0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6 등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제혜택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소득공제(C)	판매수수료가 없으며, 투자자의 가입제한이 없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소득공제(C-E)	판매수수료가 없으며, 판매회사의 온라인 전용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소득공제(S-T)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오후 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

(나) 17시(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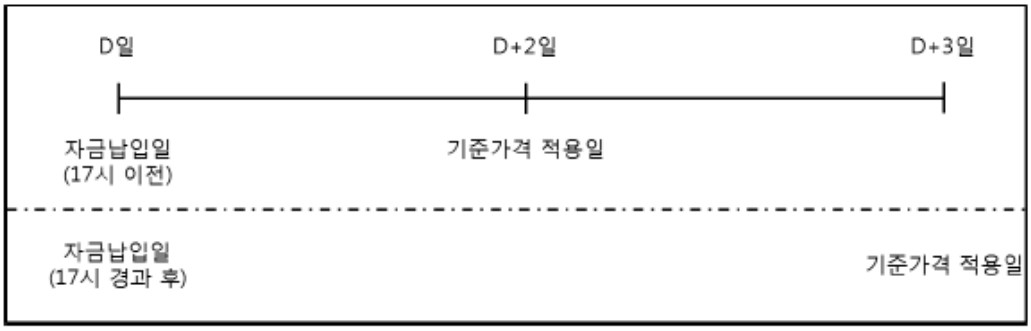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처리합니다. 다만, 투자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 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단,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 원으로 합니다.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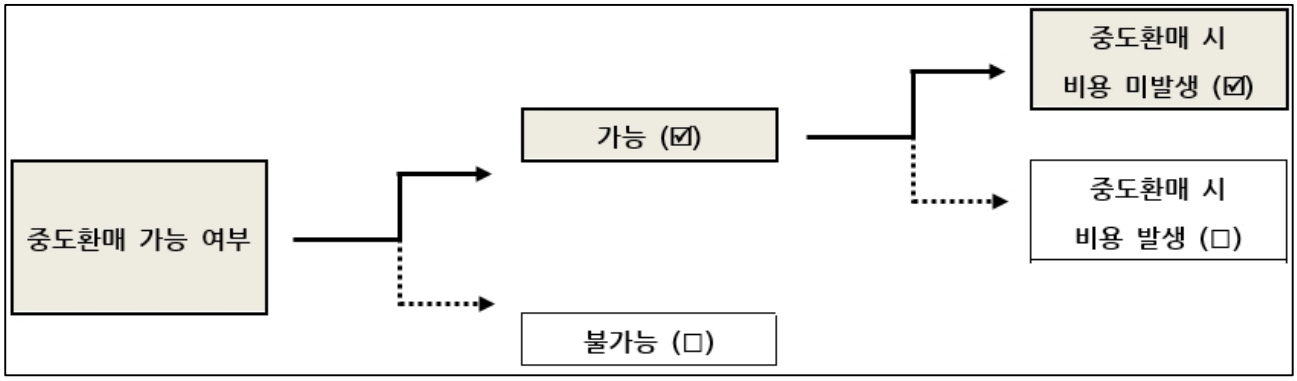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등"이라 함)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 235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수탁회사는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합니다.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오후 5시) 이전 환매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에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9영업일(D+8)에 환매금액 지급

(나) 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5영업일(D+4)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10영업일(D+9)에 환매금액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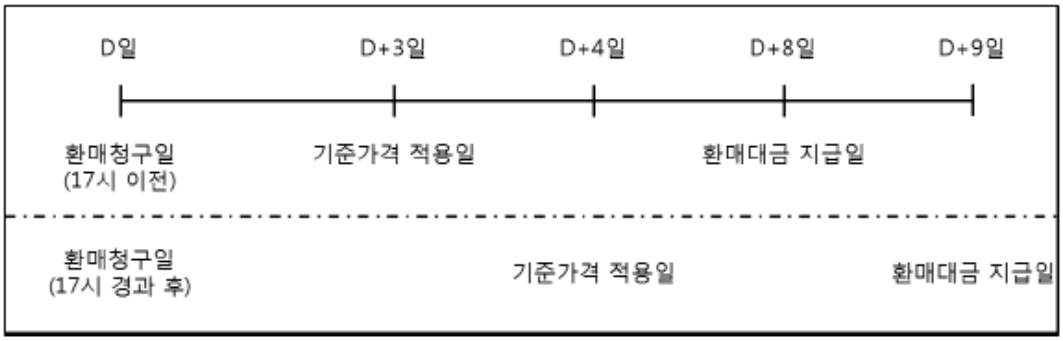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처리합니다.

다만, 투자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 시[오후 5 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청구 및 환매 청구가 17 시[오후 5 시] 경과 후에 이루어졌을 경우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투자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투자자 명부에 기재된 투자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투자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7 영업일(17 시 경과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8 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나)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 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257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아래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ⅰ)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ⅱ) 기타 법 시행령 제 257 조 제 2 항에서 정한 사항

(나)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ⅰ)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ⅱ)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ⅲ)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ⅳ) 기타 법 시행령 제 257 조 제 3 항에서 정한 사항

※ 환매연기사유

1.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나) 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다)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익자는 이 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을 취득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라) 집합투자업자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없이 수익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주요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며,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을 1 좌를 1 원으로 하여 1,000 원으로 공고합니다.
공시방법 및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vam.koreainvestment.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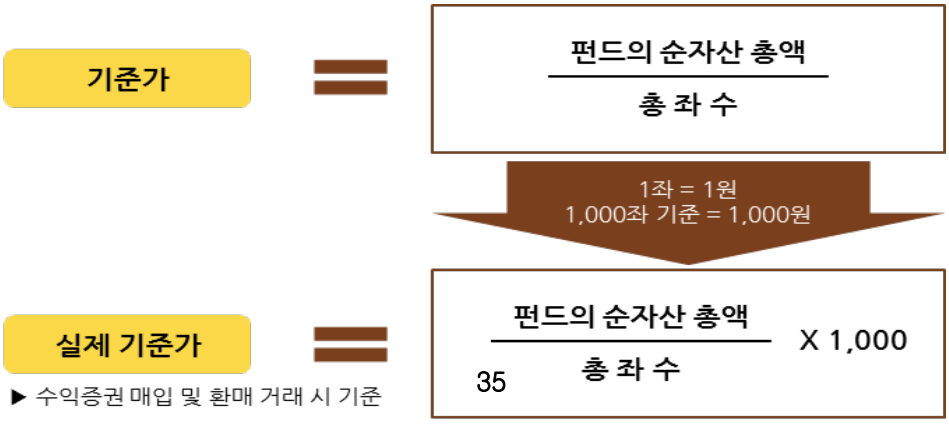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원칙

구 분	평가원칙
시 가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함)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2.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공정가액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말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합니다)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가. 채권평가회사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다. 신용평가업자 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마.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 당해 거래소에서 평가기준일에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다만, 평가기준일의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당해 주식의 최종시가로 평가
비상장·비등록 지분증권	- 취득가. 다만, 취득가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평가할 수 있음.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규약에 평가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채무증권 등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그밖에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등의 평가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하여 평가

파생결합증권	- 당해 파생결합증권의 발행회사 또는 채권평가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위원회가 정한 가격으로 평가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파생결합증권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당해 거래소에서 평가기준일에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로 평가. 다만 평가기준일의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당해 증권의 최종시가로 평가
장내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발표하는 가격(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으로 평가
장외파생상품	- 파생상품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 또는 제출한 평가방법에 의하거나 발행회사 또는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집합투자증권	- 공고된 최종 기준가격으로 평가.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그 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로 평가
기타자산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

(3)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등

구 분	주요내용
구 성	대표이사, CIO, CMO, 준법감시인, 운용 부서장, 운용지시 담당부서장, 리스크관리주관부서장
업 무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출자전환 주식 등 시장 매각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의 공정가액 산정에 관한 사항 6.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의 종료시각 차이에 따라 외화표시자산의 기준시점 적용등 평가에 관한 사항 7.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8. 평가 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자산의 평가에 관하여 관련법규 및 이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10.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 및 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로부터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수수료율			
	선취판매 수수료	후취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전환 수수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소득공제(C)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소득공제(C-E)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소득공제(S-T)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부과기준	**매입 시**	**환매 시**	**환매 시**	**전환시**

(주 1) 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 2)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율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되오니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3) 종류 수익증권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은 "제 2 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총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합성 총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증권거래비용
수수료 미징구-오프라인-소득공제(C)	0.5000	0.7000	0.0300	0.0200	1.2500	1.5700	-	1.2500	1.2737	0.4052
수수료 미징구-온라인-소득공제(C-E)	0.5000	0.3500	0.0300	0.0200	0.9000	1.1800	0.0002	0.9002	0.9242	0.4066
수수료 미징구-온라인 슈퍼-소득공제(S-T)	0.5000	0.2100	0.0300	0.0200	0.7600	-	0.0002	0.7602	0.7841	0.4059
지급 시기	최초 보수 계산일로부터 매 3개월						사유 발생시			사유 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23.03.17 ~ 2024.03.16]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모자형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 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직전 회계연도: 2023.03.17 ~ 2024.03.16]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합성 총보수 ·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6) '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7) 직전 회계기간 중 실제 발생한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금융비용, 발행분담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23.03.17 ~ 2024.03.16]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기타비용	0.32
증권거래비용	727.96
금융비용	-
발행분담금	22

※ 관련 비용의 종류 및 내역

① 기타비용 :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감사보수, 기타위탁보수(보관대리인보수, 지급대리인보수), 대차거래비용(대차관련수수료), repo거래비용(repo 수수료), 기타비용(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음)
② 증권거래비용 : 주식·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기타 증권 등 자산매매수수료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음)
③ 금융비용 : 상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이 있으며,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발행분담금 :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그 증권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이 부담하는 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의 일부

※ 제 3 자의 ESG 관련 평가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 평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나, 그 비용은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1,000 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원)

구분		투자기간				
		1 년후	2 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소득공제(C)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28	261	399	690	1,518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31	266	406	703	1,545
수수료미징구-온라인-소득공제(C-E)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92	188	288	501	1,112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95	193	296	514	1,140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소득공제(S-T)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78	159	244	424	945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80	164	251	437	974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이익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최초설정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투자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 환급비율 *
*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 으로 함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양도(전자증권법 제 30 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 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법인의 다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수익자에 대한 과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구분	주요 내용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20 및 동법 시행령 제 93 조의 6
가입자격	-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20 및 동법 시행령 제 93 조의 6 에 따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서 가입자격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93 조의 6 제 1 항에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에 한합니다. 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 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 천 8 백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 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24 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적용합니다. * 청년: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일 현재 19 세 이상 34 세 이하인 사람[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27 조제 1 항제 1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 년을 한도로 한다)을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 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자료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소득확인증명서 2.「병역법 시행령」제 155 조의 7 제 2 항에 따른 병적증명서(가입일 현재 연령이 35 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함)
가입기간	**2024 년** 12 월 31 일까지(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일 기준) ※ 이 투자신탁의 경우, 매입청구일(자금납입일)로부터 3 영업일에 수익증권을 매입하므로, **2024 년** 12 월 27 일 17 시 이전까지의 매입청구(자금납입)분까지 적용됩니다.
저축계약기간	3 년 이상 5 년 이하 *다만, 3 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시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100 분의 6 을 곱한 금액을 추징
가입한도	연 600 만원 이내 (모든 금융회사에 가입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합계액을 말한다)
세제혜택	납입금액의 40%(연 240 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가입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한 경우(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3 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제 3 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포함)에는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함. 다만, 전환가입(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고「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을 하기 위하여 해지한 경우 해지 전의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다만,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같은 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합니다. 1.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 천 7 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4.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고「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이하 "전환가입"이라 한다.)한 경우. 이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그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된 금액 중 전환가입에 따라 종전의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서 이체된 금액으로 한정**

감면세액추징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가입자가 가입일부터 3 년 미만의 기간 내에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100 분의 6 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추징하여 저축 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 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망 ·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며,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합니다. ※ 사망 ·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1. 가입자의 사망 · 해외이주 2. 계약 해지일 전 6 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 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 · 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바.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1 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 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 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3.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전환가입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20 및 동법 시행령 제 93 조의 6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저축에 대한 과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관련세법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소득 및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개별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1기 (2023.03.17 ~ 2024.03.16)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통합 재무상태표			
항 목	제 1기		
	2024.03.16		
운용자산	483,420,048		
증권	482,283,147		
파생상품	0		
부동산/실물자산	0		
현금 및 예치금	1,136,901		
기타 운용자산	0		
기타자산	1,633,488		
자산총계	485,053,536		
운용부채	0		
기타부채	2,549,045		
부채총계	2,549,045		
원본	392,903,433		
수익조정금	51,067,394		
이익잉여금	38,533,664		
자본총계	482,504,491		

(단위: 원, %)

통합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기		
	(2023.03.17 ~ 2024.03.16)		
운용수익	40,261,031		
이자수익	41,333		
배당수익	0		
매매/평가수익(손)	40,219,698		
기타수익	0		
운용비용	1,691,563		
관련회사 보수	1,691,563		
매매수수료	0		
기타비용	35,804		
당기순이익	38,533,664		
매매회전율	193.64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결산 분배금이 있는 경우 계정 분류의 차이로 인하여 요약 재무정보의 부채 및 자본 항목과 "나.재무상태표"의 금액이 상이합니다.
주3)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 (1기 0원, 0기 0원, 0기 0원 발생)
주4)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 (1기 0원, 0기 0원, 0기 0원 발생)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백만원, %)

구분	당기			전기		
	거래금액(A)	거래비용		거래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비율 (B/A)		금액(B)	거래비용비율 (B/A)
주식	648.59	0.62	0.10			
주식이외의증권(채권등)	125.97	0.10	0.08			
장내파생상품	65.06	0.00	0.00			
장외파생상품						
합계	839.63	0.73	0.09			

주1) [직전 회계연도 :2023.03.17 ~ 2024.03.16]
주2) 주식 중개수수료 등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기재하되 장외 채권거래와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렵거나 부동산 등과 같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수익적 지출 등 비용으로 산정되는 항목은 기재)은 작성 생략 가능
주3)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로 안분하여 기재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백만원, 주, %)

주식매수		주식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A/B)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7,036.00	349.00	5,485.00	300.00	155.00	193.64	31.85

주1) [직전 회계연도 : 2023.03.17 ~ 2024.03.16]
주2)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이란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을 의미
주3)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로 안분하여 기재

나. 재무상태표

(단위: 원)

과 목	제1기 (2024.03.16)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0		0		0
운 용 자 산		0		0		0
현금및예치금		1,136,901		0		0
1. 현금및현금성자산	1,136,901		0		0	
2. 예치금	0		0		0	
3. 증거금	0		0		0	
대출채권		0		0		0
1. 콜론	0		0		0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0		0		0	
3. 매입어음	0		0		0	
4. 대출금	0		0		0	
유가증권		482,283,147		0		0
1. 지분증권	0		0		0	
2. 채무증권	0		0		0	
3. 수익증권	482,283,147		0		0	
4. 기타유가증권	0		0		0	
파생상품		0		0		0
1. 파생상품	0		0		0	
부동산과 실물자산		0		0		0
1. 건물	0		0		0	
2. 토지	0		0		0	
3. 농작물	0		0		0	
4. 축산물	0		0		0	
기타운용자산		0		0		0
1. 임차권	0		0		0	
2. 전세권	0		0		0	
기타자산		1,633,488		0		0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1,632,160		0		0	
2. 정산미수금	0		0		0	
3. 미수이자	1,328		0		0	
4. 미수배당금	0		0		0	
5. 기타미수입금	0		0		0	
6. 기타자산	0		0		0	
7. 수익증권청약금	0		0		0	
자 산 총 계		485,053,536		0		0
부 채		0		0		0
운용부채		0		0		0
1. 파생상품	0		0		0	
2. 환매조권부채권매도	0		0		0	
3. 기타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2,549,045		0		0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0		0		0	
2. 정산미지급금	0		0		0	
3. 해지미지급금	1,616,000		0		0	
4. 수수료미지급금	933,045		0		0	
5. 기타미지급금	0		0		0	
6. 기타부채	0		0		0	
부 채 총 계		2,549,045		0		0
자 본		0		0		0
1. 원본	392,903,433		0		0	
2. 이월잉여금	89,601,058		0		0	
(발행좌수 당기 : 392,903,433 좌	이익잉여금	38,533,664		0		0
전기 : 0 좌	수익조정금	51,067,394		0		0
전전기 : 0 좌)						
(기준가격 당기 : 1,226.17 원						
전기 : 0.00 원						
전전기 : 0.00 원)						
자 본 총 계		482,504,491		0		0
부 채 와 자 본 총 계		485,053,536		0		0

다. 손익계산서

(단위: 원)

과 목	제1기 (2023.03.17 ~ 2024.03.16)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40,261,031		0		0
1. 투자수익		41,333		0		0
1. 이 자 수 익	41,333		0		0	
2. 배당금 수익	0		0		0	
3. 수수료수익	0		0		0	
4. 임대료수익	0		0		0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40,304,590		0		0
1. 지분증권매매/평가차익	0		0		0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0		0		0	
3. 수익증권매매/평가차익	40,304,590		0		0	
4.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	0		0		0	
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0		0		0	
6. 외환거래/평가차익	0		0		0	
7. 기타이익	0		0		0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84,892		0		0
1. 지분증권매매/평가차손	0		0		0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0		0		0	
3. 수익증권매매/평가차손	84,892		0		0	
4.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	0		0		0	
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0		0		0	
6. 외환거래/평가차손	0		0		0	
7. 대손상각비	0		0		0	
8. 기타차손	0		0		0	
운 용 비 용		1,727,367		0		0
1. 운용수수료	893,794		0		0	
2. 판매수수료	744,709		0		0	
3. 수탁수수료	53,060		0		0	
4. 투자자문수수료	0		0		0	
5. 임대자산수수료	0		0		0	
6. 기 타 비 용	35,804		0		0	
당기순(손실)이익		38,533,664		0		0
1. 1000좌당 순(손실)이익		98		0		0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종류 C]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3.17 ~ 2024.03.16	-	-	0.70	0.80	-	-	0.70	0.90

주 1) 2023.03.17 ~ 2024.03.16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 [544,846] 좌 / [667,596] 원

[종류 C-E]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3.17 ~ 2024.03.16	-	-	3.30	3.70	0.10	0.10	3.10	3.80

주 1) 2023.03.17 ~ 2024.03.16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 [3,078,315] 좌 / [3,732,945] 원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기준일: 2024년 5월 3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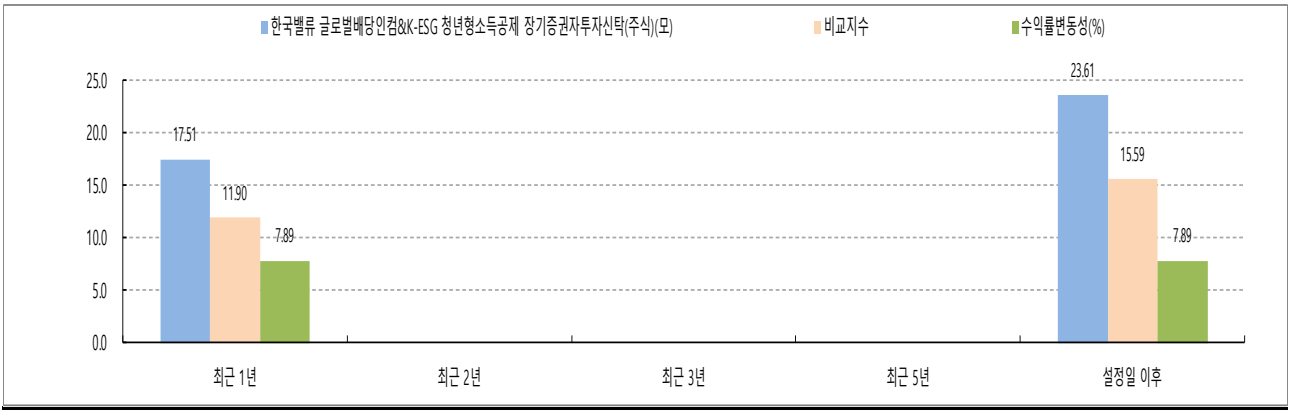

기간		설정일	최근 1 년 2023.05.04~ 2024.05.03	최근 2 년 2022.05.04~ 2024.05.03	최근 3 년 2021.05.04~ 2024.05.03	최근 5 년 2019.05.04~ 2024.05.03	설정일 이후
운용		2023.03.17	17.51				23.61
비교지수			11.90				15.59
수익률변동성(%)			7.89				7.89
종류 C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소득공제	2023.03.17	16.09				22.19
	비교지수		10.67				14.51
	수익률변동성(%)		7.90				7.89
종류 C-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소득공제	2023.03.27	16.48				22.01
	비교지수		11.90				14.10
	수익률변동성(%)		7.89				7.95

주1) 비교지수 = **[KOSPI*90%]+[CD금리*1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 기간 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4)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5)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 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기준일: 2024년 5월 3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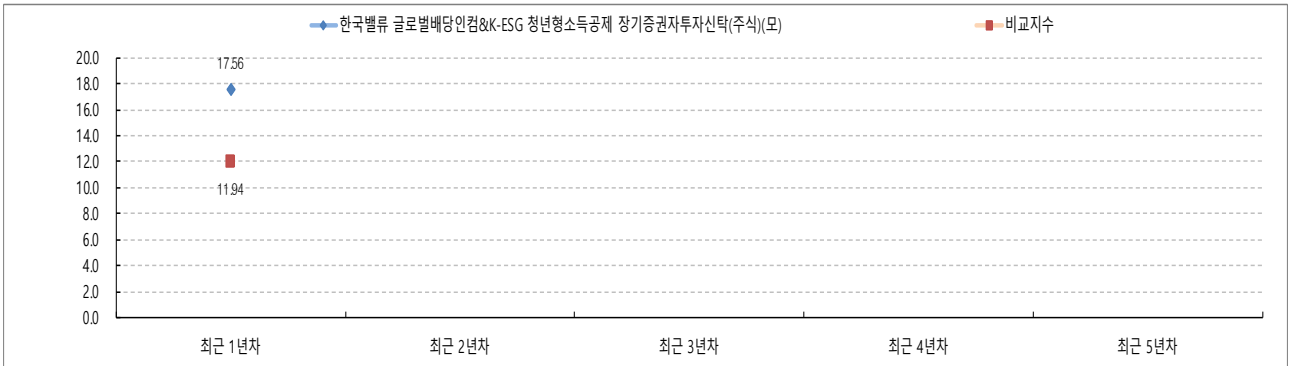

기간	최근 1 년차 2023.05.04~ 2024.05.03	최근 2 년차 2022.05.04~ 2023.05.03	최근 3 년차 2021.05.04~ 2022.05.03	최근 4 년차 2020.05.04~ 2021.05.03	최근 5 년차 2019.05.04~ 2020.05.03
운용	17.56				
비교지수	11.94				

종류 C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소득공제	16.14				
	비교지수	10.70				
종류 C-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소득공제	16.53				
	비교지수	11.94				

주1) 비교지수: **[KOSPI*90%]+[CD금리*10%]**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2)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주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 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 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6)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7)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8)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 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기준일: 2024.03.31 /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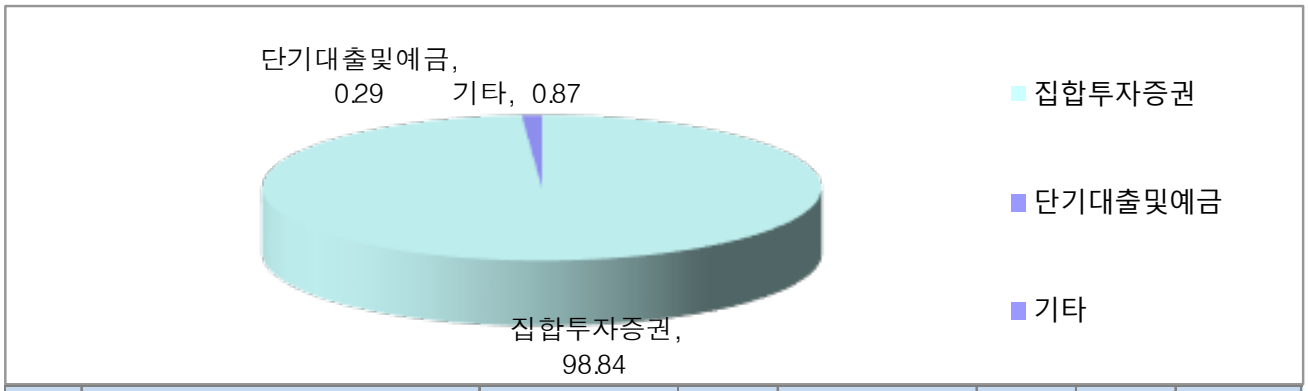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5	0	0	0	0	0	0	0	5
	(0.00)	(0.00)	(0.00)	(98.84)	(0.00)	(0.00)	(0.00)	(0.00)	(0.00)	(0.29)	(0.87)	(100.00)
합계	0	0	0	5	0	0	0	0	0	0	0	5
	(0.00)	(0.00)	(0.00)	(98.84)	(0.00)	(0.00)	(0.00)	(0.00)	(0.00)	(0.29)	(0.87)	(100.00)

주 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1) 국내 주식 업종별 구성현황

(기준일: 2024.03.31 / 단위: 억원, %)

구분	업종명	평가액	보유비율
1	전기,전자	0.8	27.75
2	운수장비	0.4	13.99
3	화학	0.3	11.07
4	서비스업	0.2	8.70
5	음식료품	0.2	6.37
6	기타금융	0.2	6.07
7	유통업	0.1	4.83
8	기타(미분류)	0.1	3.53
9	섬유,의복	0.1	3.04
10	기계	0.1	2.68
11	기타	0.3	11.98
합 계		**2.8**	**100.00**

(주 1) 보유비율 = (평가액 / 총평가액) * 100

(2)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국가별 구성 현황 (기준일: 2024.03.31 / 단위: 억원, 십만USD,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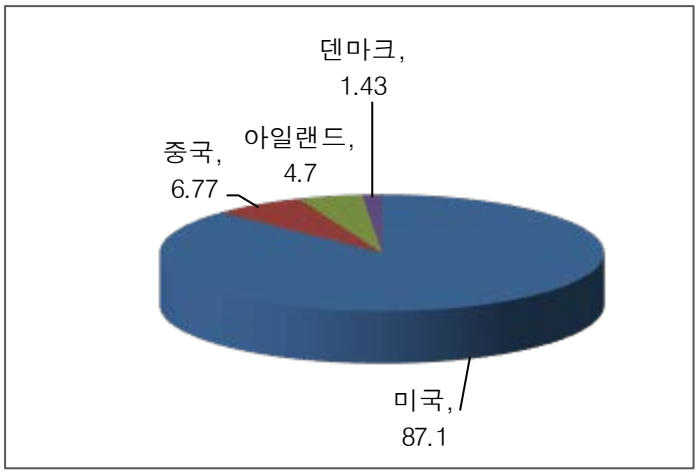

국가	해외주식	
	금액	비중
미국	1	87.1
중국	0	6.77
아일랜드	0	4.7
덴마크	0	1.43

(3)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통화별 구성 현황 (기준일: 2024.03.31 / 단위: 억원, 십만USD,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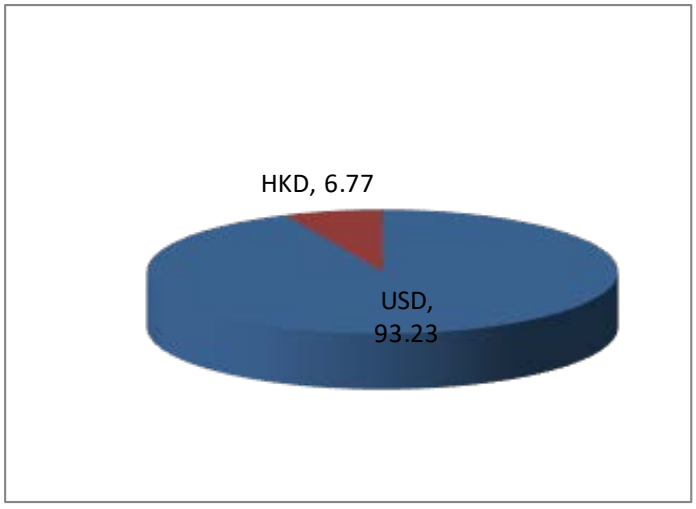

거래통화	해외주식	
	금액	비중
USD	2	93.23
HKD	0	6.77

■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1) 한국밸류 지속성장 ESG 증권모투자신탁(주식) (기준일: 2024.03.31 /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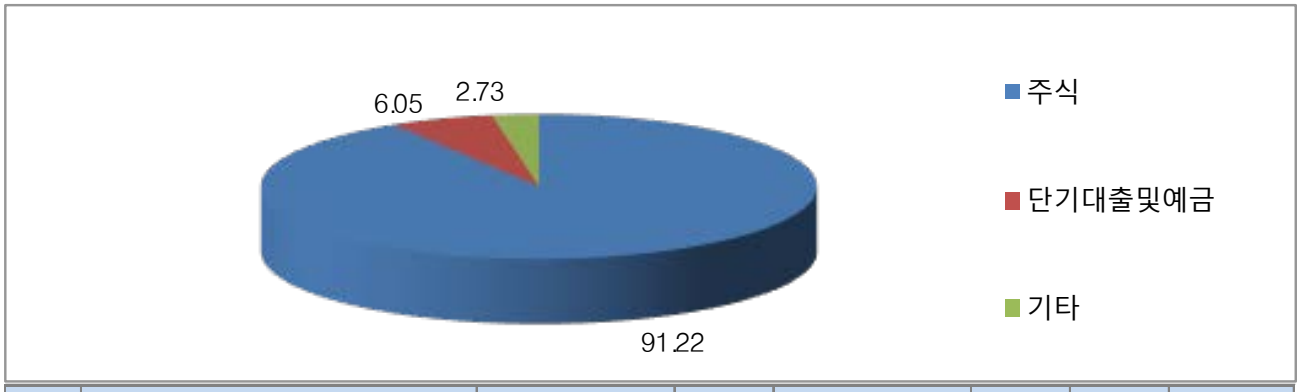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330	0	0	0	0	0	0	0	0	22	10	362
	(91.2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6.05)	(2.73)	(100.00)
합계	330	0	0	0	0	0	0	0	0	22	10	362
	(91.2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6.05)	(2.73)	(100.00)

주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2) 한국밸류 글로벌리서치 배당인컴 증권모투자신탁(주식) (기준일: 2024.03.31 /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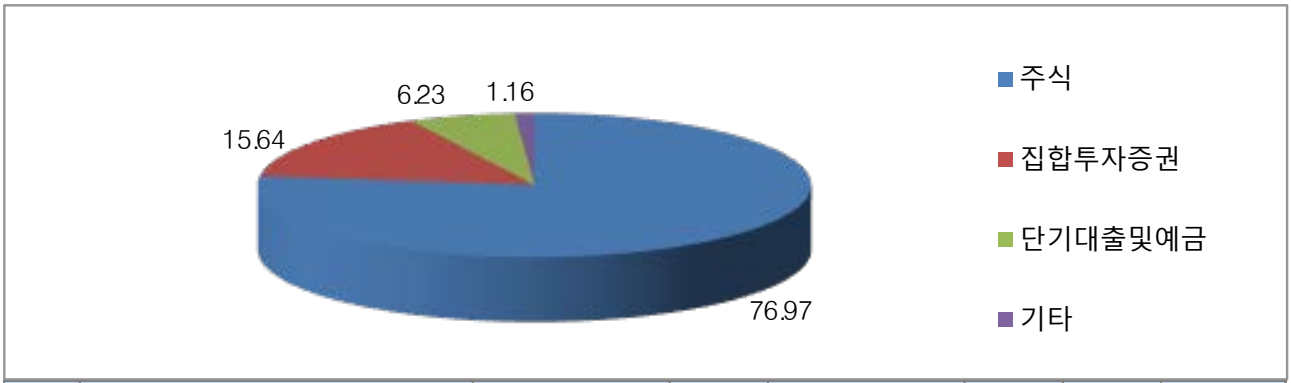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EUR	0	0	0	0	0	0	0	0	0	0	0	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00)	(0.00)	(0.00)
HKD	12	0	0	0	0	0	0	0	0	0	0	12
	(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4.60)
JPY	0	0	0	0	0	0	0	0	0	6	0	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00)	(0.00)	(2.19)
KRW	24	0	0	0	0	0	0	0	0	11	3	38
	(64.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8.38)	(7.62)	(14.01)
USD	170	0	0	42	0	0	0	0	0	0	0	212
	(80.05)	(0.00)	(0.00)	(19.75)	(0.00)	(0.00)	(0.00)	(0.00)	(0.00)	(0.08)	(0.11)	(79.19)
합계	206	0	0	42	0	0	0	0	0	17	3	268
	(76.97)	(0.00)	(0.00)	(15.64)	(0.00)	(0.00)	(0.00)	(0.00)	(0.00)	(6.23)	(1.16)	(100.00)

주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사. ESG 투자전략 이행현황

① ESG 투자전략 이행현황: 당사는 연 2 회 서스틴베스트 ESG 평가결과에 따라, 당사 ESG 유니버스 또한 변경 및 수정하고 있습니다.

※ **서스틴베스트 ESG 평가방법**

서스틴베스트는 2007 년부터 자체 개발한 ESGValue™ 모형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의 ESG 평가 업무를 수행해 온 전문평가기관이며,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준수하고 있음.

■ **평가체계 구조**

서스틴베스트는 기업의 가치사슬과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각 영역별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기업의 ESG 관리 수준을 평가함.

o 환경(E) 영역에서는 기업이 기후변화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최소화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지 평가함.

o 사회(S) 영역에서는 근로자, 협력업체, 소비자, 지역사회 관점에서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수준을 평가함.

o 지배구조(G) 영역에서는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형태의 지배구조를 보유하고 있는지, 경영진에 대한 내부통제 수준과 외부통제 수준이 높은지, 기업성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절한 수준으로 배분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함.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설계된 서스틴베스트의 ESG 평가모형>

출처: 서스틴베스트

■ **평가방법**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의 기업공시 자료, 공공기관 및 언론기관의 대외 공개 자료 등을 기반으로, ESG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업의 ESG 리스크 관리 수준을 평가함. ESG 측면에서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횡령·배임, 산업안전 사고 등의 ESG 컨트로버시 사건의 심각성, 재발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평가에 반영함. 기업의 규모 및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의 ESG 점수(100 점 만점) 및 ESG 등급(7 등급 체계: AA, A, BB, B, C, D, E)를 산출함. 상세한 평가 방법론은 서스틴베스트 웹페이지 (아래 링크)에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sustinvest.com/company/pubAnnc/view?cntntSeq=2523&startYmd=&endYmd=&searchType=both&searchWord=&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

o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가중치 사용

o 기업의 자산규모에 따른 평가체계 활용

o 순수지주회사의 경우 계열회사의 성과를 반영

o 국내 지배구조의 특수성을 반영, 대규모 기업집단 평가를 통한 주주가치 훼손 리스크 평가

o 기업 피드백(verification) 절차를 통한 데이터의 신뢰성과 정확성 제고

② 주주활동 내역: 당사는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 및 주주관여 활동을 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vam.koreainvestment.com)를 통해 매년 1 회 이상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구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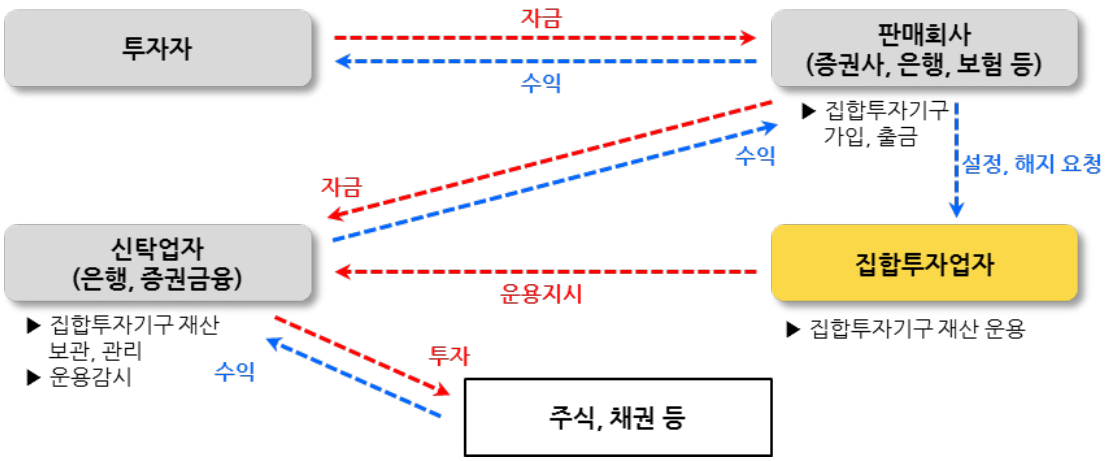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 길 28 (대표전화: 02-6978-6300, vam.koreainvestment.com)
회사연혁	2006. 02: 밸류운용㈜ 설립 2006. 04: 자산운용업 허가, 한국밸류자산운용㈜ 사명변경 2006. 12: 한국밸류 10 년투자펀드, 금융감독원 선정 2006 년 우수금융신상품 최우수등급상 수상 2006. 12: 이채원 전무, 금융감독원 선정 '올해의 업무유공자' 수상 2008. 08: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으로 상호 변경 2009. 04: 국내 최초 고객초청 운용보고대회 개최 2009. 07: 투자일임업 실시 2010. 02: '생활속의 펀드이야기' 펀드 역사 전시회 개최 2010. 02: 투자자문업 실시 2012. 07: 최대주주 변경(한국투자운용지주→한국투자증권)
자본금	131.3 억
주요주주현황	한국투자증권(100%)

나. 주요 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2)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

요약재무상태표			요약손익계산서		
계정과목	2023.12.31	2022.12.31	계정과목	'23.01.01 ~'23.12.31	'22.01.01 ~'22.12.31
현금및예치금	107,063	10,142	영업수익	124,910	17,49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870,168	2,402,113	영업비용	24,644	21,87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765	790	**영업이익**	**100,265**	**(4,384)**
관계기업및종속기업투자	353,639	510,882	영업외수익	24,779	2,271,972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280	207	영업외비용	15,530	2,537
유형자산	4,318	42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09,514**	**2,265,050**
무형자산	1,091	896	법인세비용	20,578	609,099
기타자산	24,561	3,652	**당기순이익**	**88,936**	**1,655,951**
자 산 총 계	**1,361,888**	**2,929,108**			
당기법인세부채	15,809	6,405			
퇴직급여부채	168	114			
충당부채	167	114			
기타부채	6,144	13,120			
이연법인세부채	607,035	600,700			
부 채 총 계	**629,326**	**620,455**			
자본금	13,130	13,130			
자본잉여금	6,565	622,848			
기타자본구성요소	(554)	(528)			
이익잉여금	713,421	1,673,201			
자 본 총 계	**732,562**	**2,308,652**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361,888**	**2,929,108**			

라. 운용자산 규모 (2024.05.03 현재 / 단위: 억원)

구분	증 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MMF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재간접형					
수탁고	12,855	496	7,840	1,206	0	0	5,069	0	27,466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 회사개요

회사명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 1 가) ☏ 1599-1111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http://www.kebhana.com

(2) 주요업무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4.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5. 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금 · 수익금 · 임대료 등의 수령

6. 무상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수령
7.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8.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9.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의무 및 책임

- 의무

1.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2.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 ·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3.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법 제238조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제238조 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법 제93조 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제88조 제1항 · 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69조 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

-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판매회사 · 일반사무관리회사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는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개요

회사명	주식회사 KB 국민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 길 26(여의도동) (1588-9999)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http://www.kbstar.com

***최초설정일부터 2022년 9월 18일까지는 신한아이타스, 2022년 9월 19일부터 KB국민은행으로 변경**

(2) 주요업무: 기준가격 산정 및 통보

(3) 의무 및 책임

1.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2. 법령 ·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홈페이지
한국자산평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삼환빌딩 (02-2251-1300)	www.koreaap.com
KIS 자산평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 길 38 (02-3215-1400)	www.bond.co.kr
NICE 피앤아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 길 19 (02-398-3900)	www.nicepni.co.kr
㈜에프앤자산평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 2 로 61 (02-721-5300)	www.fnpricing.com

(2) 주요 업무

- 채권평가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준칙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집합투자기구에게 제공합니다.
  1.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평가 업무를 수행할 것
  2.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할 것
  3.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평가 업무를 위하여 취득한 정보를 다른 업무의 수행에 이용하지 아니할 것
- 집합투자업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증권의 평가가격을 제공받는 경우 그 비용을 집합투자기구에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의무 및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7. ESG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홈페이지
서스틴베스트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22 층 (02-6310-9300)	https://sustinvest.com/

가. 주요업무

국내 기업에 대한 ESG 관련 정보를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당사 ESG 평가모형에 따라 평가하여 국내 기업의 ESG 리스크 관리 수준을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정량화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나. 의무 및 책임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여 제공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해당 데이터를 활용한 운용 결과에 따른 수익자의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종류 집합투자자 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등은 아래의 투자자 총회의 소집절차를 준용합니다. 다만, 종류집합투자자총회의 운용비용은 그 종류집합투자기구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모자형투자신탁인 경우,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는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소집됩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가)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 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 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함)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 주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법 제 190 조 제 5 항 및 제 6 항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으로 봅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 분할 · 분할합병,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나. 법 제 184 조 제 4 항, 법 제 246 조 제 1 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다. 법 제42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0 조 제 1 항 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마. 법시행령 제 245 조 제 5 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신탁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7.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합병 · 분할 · 분할합병
   나. 법 제 420 조 제 3 항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0 조 제 1 항 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8. 환매금지형투자신탁(존속기간을 정한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투자신탁을 말한다)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9.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10.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법시행령 제 222 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 · 서류의 열람 및 등 · 초본 교부청구권

(1)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 ·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2)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 ·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3)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1) 금융투자업자는 법령 · 집합투자규약 · 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의 주체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 · 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 · 분석 · 확인 ·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상품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단,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사모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설정한 후 <u>1년(법시행령제 81 조제 3 항 제 1 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 년)</u>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사모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u>1년(법시행령제 81 조제 3 항 제 1 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 년)</u>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대금에서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 또는 판매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 법 제87조제8항제1호 · 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 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 서류"라 함)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하고, 이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가.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나. 회계기간의 말일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해당 운용기간”이라 한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3.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5.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역
  6. 투자신탁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7. 투자신탁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8. 투자신탁의 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
  9.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10.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
  11. 투자신탁의 구조.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

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12. 투자신탁의 유동성 위험
12의2. 투자신탁의 운용위험에 대한 관리방안
13.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자산보관. 관리보고서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4. 법 제247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230조 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3.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9.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수시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수시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아래의 공시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 이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vam.koreainvestment.com),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1. 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2.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위험지표의 공시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기준일: 2024.05.03 현재, 단위: 백만원)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 금액
펀드명	성명(상호)	관 계			
한국밸류 지속성장 모 ESG	한국투자증권	최대주주	위탁거래	주식	229
한국밸류글로벌리서치 모배당인컴	한국투자증권	최대주주	위탁거래	주식	16
한국밸류글로벌리서치 모배당인컴	한국투자증권	최대주주	위탁거래	선물	136

주 1) 거래 금액은 작성기준일로부터 과거 1 년간 금액입니다.
주 2) 상기 위탁거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 조제 1 호에 해당하여 집합투자기구와 이해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입니다.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1) 투자중개업자 선정의 기본원칙

- 당사 집합투자재산의 이익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선정 방법

-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는 Trader, Manager 등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담당자들이 주식부문, 채권부문 모두 3 개월에 1 회 실시합니다.

(3) 평가 항목

- 매매처리의 적정성 및 신속 정확성, 시장정보 제공 및 수준, 신용도, Back-office 의 서비스 수준, 수수료 수준 등 매매업무 기여도와 관련된 사항과 시장, 업종 또는 종목 분석자료의 효용성, 분석 Tool 의 제공, 시장정보의 제공 및 수준, 종목추천, 기업탐방 주선 및 투자설명회 개최 등 펀드운용 및 기업분석 업무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붙임] 용어풀이

용어	내용
금융투자상품	이익추구 혹은 손실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투자원금 및 운용성과를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채권, 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단위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불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채권 및 주식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이자 ·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채권 및 주식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판매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판매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정해진 일정기간동안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때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수익자총회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투자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을 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집합투자규약에 따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Benchmark)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 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펀드는 그 비교지수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투자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ESG 집합투자기구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상 'ESG(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에 "ESG"가 포함되어 있거나 투자설명서 상 투자목적 또는 투자전략에 'ESG'와 관련된 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